

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7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공사 설립에 대비하여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·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(안 제2조).
- 나.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, 공사를 최초 설립하는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함 (안 제3조).
- 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 (안 제5조).
- 라.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,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(안 제6조).
- 마. 사장후보는 2인 이상 추천하고,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통 보해야함 (안 제8조).
- 바.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(안 제11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, 제60조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
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○ 입법예고 : 2008.7.21. ~ 8.11.(20일간)
- 기타참고사항
○ 지방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및 설립여부 최종결정 문서.

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6항의 규정의 따라 시가 설립 운영하는 안산지방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시가 설립한 안산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이라 한다)의 사장후보자(이하 “후보자”라 한다)를 추천받기 위하여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
 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 3.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- ② 당해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시 소속공무원(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존속기간) 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.

제5조(위원장의 임무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시의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후보자의 추천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를 2명 이상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상임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자

2.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대표로 2년 이상 재직한 자

3.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
4.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이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

5. 정규직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

6. 그 밖에 위원회가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

②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자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(후보자의 모집방법)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는 안산시보, 일간지,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무협조)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및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· 과		투 자 경 영 과
일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투자경영과장 박석운
	담당 직위·성명	투자기획담당 황세하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승규 (☎481-3434)

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2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11. 13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 정 이 유

- 경기도내 설립된 대부분의 “지방공사”가 “도시공사”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“도시공사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조례 제명“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을 “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으로 수정함.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“안산지방공사”를 “안산도시공사”로 수정함.(안 제3조 제2항)

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명 “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을
“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으로
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지방공사”를 “안산도시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안산지방공사”를 “안산도시공사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
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<u>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 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립 운영하는 <u>안산지방공사</u>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<u>안산지방공사</u>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시가 설립한 <u>안산지방공사</u>(이하“공사”라 한다)의 사장 후보자(“이하”후보자“라 한다)를 추천받기 위하여 <u>안산지방공사</u> 시장추천위원회(이하 ”위원회“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(생 략) <u>② 당해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 한다) 및 시 소속공무원(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	<p><u>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안산도시공사</u>----- -----<u>안산도시공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 <u>안산도시공사</u>----- ----- -----<u>안산도시공사</u>----- ----- ----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(원안과 같음) <u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u> 1. 경영전문가 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.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. 공인회계사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p>